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金 柄 烈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1. 서 론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 및 허구성
3. 어업협정과 독도
4.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독도
5. 결 론

1. 서 론

독도(獨島)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우산국(于山國)이 이사부(異斯夫) 장군의 정벌에 의해 신라에 복속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되어 왔다. 그런데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¹⁾ 발표하자 열흘 뒤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 대한민

1) 대한민국 인접 해안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국무령고시 제14호(1952.1.18), 원문은 김병렬, 「독도-독도자료총람」(서울: 다다미미디어, 1998), pp. 229-234 참조.

국의 선언은 다케시마(竹島)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²⁾ 하는 항의각서를 보내왔다. 이 항의각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앞서 1905년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이처럼 외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논쟁이 1982년에는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 파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에 격분한 한국은 국민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일본의 모든 망언·망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 4년마다 실시하는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왔다. 그러더니 2005년에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竹島)는 한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하였다.⁴⁾ 이는 2001년 판⁵⁾의 내용에 “국제법상으로도”라는 구절이 추가된 것으로써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표현이다. 이러한 가운데 2월 23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시마네켄(島根縣)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다시 한번 한국민을 격양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 전략을 수정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독도 입도통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⁶⁾ ‘한·일우정의 해’라는 슬로건에 무색하게 한·일관계는 뽕뽕 얼어붙었다.

따라서 본고는 원만한 한·일관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일

2) 1952년 2월 28일자 일본측 구술서, 원문은 앞의 책, pp. 393-395.

3) 1953년 7월 13일자 일본측 구술서. 원문은 신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p. 41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竹島問題,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2005.4.16 방문.

4)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공민교과서」(東京:扶桑社, 2005 검정판), p. 128.

5)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공민교과서」(東京:扶桑社, 2001), p. 105.

6) 조선일보, 2005.3.17.

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근거가 왜 정당성이 없는지를 논파(論破)한 후 원만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양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 및 허구성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크게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과 ‘1905년의 편입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과 그 허구성

1) 일본측 사료에 의한 주장

일본 정부는 1962년 7월 13일자 외교각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종래의 주장 입장을 명백히 해왔으며, 그리고 이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는 바이다.⁷⁾

그리고는 이에 대한 근거로 1667년에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지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7) 대한민국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I) 왕복외교문서(1952-76)』, 집무자료 77-134(복일)
(서울 : 외무부, 1977), p. 234.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주⁸⁾는 북해 중에 있다. 옛날에는 은기도라고 했다. ... 북서쪽으로 2일 낮 하루 밤을 가면 송도⁹⁾가 있다. 또 이곳에서 다시 1일을 가면 죽도¹⁰⁾가 있다(속언에 기죽도라고 말하는데 대나무와 물개가 많다.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50맹일까). 이 두 섬은 무인도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¹¹⁾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밀줄 필자)

따라서 당시 일본의 한계는 '이 주, 즉 죽도(오늘날의 울릉도)까지라는 것이다.¹²⁾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신용하 교수는 '이 주'는 울릉도가 아니고 일본의 '은주(오키도)'라고 해석한 바 있다.¹³⁾

이에 대하여 일본 타쿠쇼쿠(拓植)대학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는 신용하 교수의 해석이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면서¹⁴⁾ 주(州)는 섬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는 울릉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시모조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주(州)가 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마도를 대마주라고 하는 바와 같이 행정체제를 갖춘 마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무인 도서였던 죽도(울릉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위 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두 섬은 무인도인

8) 오키도(隱岐島)의 옛이름. 필자 주.
9) 독도의 일본식 이름. 필자 주.
10) 울릉도의 일본식 이름. 필자 주.
11) 시마네켄의 해변 마을 이름. 필자 주.
12) 위 외교각서;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か」(東京: 文春新書, 2004), pp. 169-172.
1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적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6), p. 30.
14) 下條正男, 앞의 책, p. 168.
15) 김병렬, 「독도논쟁」(서울: 다다미미디어, 2001), pp. 364-365.

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그러한 즉’은 앞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뒷부분이 성립된다는 접속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이 두 섬으로부터 일본보다는 조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두 섬은 조선의 것이고,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은주까지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의미는 ‘은주시청합기’의 편집된 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명확히 검증된다. 위에서 인용된 글은 국대기(國代記)라는 제목 하에 ‘은주시청합기’의 서문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은주’의 상세한 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뒤로는 주길군 서향(周吉郡 西鄉), 진거촌(津居村) 등의 순서로 오키도(隱岐島)내의 마을의 지형과 특산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은주’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그림은 물론 뒤에 나오는 본문의 설명에 당연히 두 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은 물론 본문 속에 두 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글의 해석은 한국 측의 해석이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역사적 근거에 자신이 없게 되자 집요하게 한국의 역사적 근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즉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산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근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¹⁶⁾ 또한 안용복의 도일활동 조차 안용복이 자신의 죄를 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며, 도쿠가와 막부에서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울릉도를 반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 中村榮孝, 「日鮮關係史研究」(東京: 吉川永文館, 昭和 44), p. 450;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總務部總務課, 昭和 40), p. 151; 植田捷雄, “竹島の歸屬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第54卷 1號(1965), p. 29; 太壽堂鼎, “竹島論争”, 「國際法外交雜誌」, 第64卷 4・5號(1966), p. 114.

17) 田畑茂二郎, 太壽堂鼎, 「ケースブック國際法」(東京: 有信堂, 1997), p. 110; 川上健三, 앞의 책, p. 191.

다음과 같다.

2) 한국 측의 사료에 대한 부정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 보면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복(歸復)하다. 우산국은 명주(溟洲)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혹은 이름하여 울릉도라 한다.…”라고¹⁸⁾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산국은 울릉도를 포함하여 죽서(竹嶼), 관음도(觀音島), 독도(獨島)까지를 아우르는 해상왕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도는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¹⁹⁾

이에 대하여 일본의 가와카미 겐소(川上健三)는 “비록 우산국이라는 이름이 사서(史書)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이 주장은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권(可視圈)에 든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와카미 겐소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상한 공식을 도입한 후 이상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²¹⁾ 하지만 독도는 지금도 바라다 보이며 당시에도 바라다 보였다. 따라서 가시권 내에 드는 무인도를 영역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독도가 우산국의 영역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1809년에 편찬된 「만기요

18)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條, 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復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洲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百里 恃嶮不服 伊浚異斯夫 爲阿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腹 乃多造木優獅子 分在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國人恐懼則降.

19) 이에 대하여 홍성근 박사는 이러한 시각은 신라적인 사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울릉도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영토였듯이 독도 또한 선사시대부터 우리민족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天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東京:古今書院, 昭和4年), pp. 98-99.

21) 자세한 계산방법은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서울: 다다미디어, 2001), p. 75.

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의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를²²⁾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만기요람」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근거로 하여 편찬된 것인데 「동국문헌비고」가 1770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1700년대에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던 독도가 분명히 우산국의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러한 독도는 고려왕조를 거쳐 조선왕조에서도 계속해서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되어 왔다. 따라서 각 지방 관리들에게 담당지역을 세밀히 보고토록 하여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를 보면 “우산과 무릉 두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다 볼 수 있다”²⁴⁾라고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관할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도가 독도이고 무릉도는 울릉도이다. 본래 울릉도는 우산국의 명칭을 따서 우산도라고 불렀다. 또한 무릉도는 도연명(陶淵明)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어원으로 한 것으로 사람이 갈 수 없는 이상향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호칭하였고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멀리 보이는 독도를 무릉도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울릉도가 무릉 또는 울릉도로 불려지게 되자, 우산도는 자연스럽게 독도의 이름으로 굳혀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⁵⁾ 따라서 1700년대 초에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이전의

22) 「萬機要覽」, 軍政篇.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 201. 당시 일본사람들은 지금과는 달리 울릉도를 竹島라고 호칭하였고 독도를 松島라고 호칭하였었다.

23) 韓鎭書가 1823년에 완성한 「海東鐸史」를 보면 “文獻備考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島則倭所謂松島也”라고 하면서 「문헌비고」를 참조하고 있다.

24)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 142.

25) 李丙燾 교수는 于山이 원래 울릉도의 古名이었는데 울릉도가 芋陵, 羽陵, 鬱陵, 蔚陵, 武陵, 茂陵 등의 書稱을 갖게 되자 본래의 于山, 芋山은 자연스럽게 독도의 서칭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李丙燾, [獨島名稱에 대한 史的 考察-于山竹島名稱考-], 「趙明基博士華

지도들은 우산도를 울릉도와 육지의 중간에 그리고 있으며, 동국지도 이후로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오른쪽 또는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바라다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울릉도에 우리 민족이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민족은 독도에 대한 원초적 권원(原初的 權原, inchoate title)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일본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은 일본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양심적인 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 고유영토설에 대하여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씨는 “일본의 제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헌법이 시행될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혼슈(本州), 큐우슈우(九州), 시코쿠(四國), 아와지시마(淡路島) 만이 고유의 영토로 되어 있다며 독도의 일본 고유영토설을 부정하였다.²⁶⁾ 뿐만 아니라 그는 독도를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땅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고유영토인가, 아닌가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라고 하고 있다.²⁷⁾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는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울릉도까지가 아니고, 한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은주까지를 일본의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²⁸⁾

안용복의 활동에 의해서 울릉도가 반환될 당시 독도까지 반환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명쾌하게 반박하고

甲紀念佛敎史學論叢(서울: 지식산업사, 1965).

26) 山邊健太郎,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第7卷 第2號, 1965, p. 4.

27) 위 논문, p. 14.

28) 梶村秀樹, 앞의 논문, p. 21.

있다. 그는 당시 도쿠가와 막부에서 ‘죽도지내송도(竹嶋之内松島)’, ‘죽도근변송도(竹島近邊松島)’, ‘죽도근소지소도(竹嶋近所之小嶋)’라고 하면서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지 독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궤변으로 혹평하고 있다.²⁹⁾ 구태여 호리가즈오 교수의 논리를 빌지 않더라도 메이지유신 시기인 1877년에 시마네켄이 내무성에 울릉도의 일도(一島)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문하자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평의에 의하여 일본과는 무관한 땅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문서를 보면 독도까지 반환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자명해진다.³⁰⁾

시마네(島根)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명예교수는 1661년에 독도 도해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¹⁾ 그는 또한 1696년 울릉도를 조선으로 반환할 당시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막부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돗토리번이 1695년 12월 25일자로 제출한 회답서에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한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울릉도가 조선령이 된 이상에는 그 섬의 부속도로 되어 있던 독도도 당연히 조선령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³²⁾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빈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데 외무성은 이러한 도둑행위를 가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³³⁾

29) 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pp. 101-102.

30) 내무성의 공문서는 김병렬, 『독도논쟁』, 앞의 책, pp. 316-320. 이 공문서의 부속문서에서 一島가 독도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1) 内藤正中,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년 6월호, pp. 55-56.

32) 위의 논문, p. 57.

또한 2005년 5월 17일자 일본 산잉쥬오신보(山陰中央新報)에 의하면 1696년 당시 안용복이 도일시 팔도지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가 강원도에 속하는 조선의 자산도라고 진술하였다는 고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한 바 있다.³⁴⁾ 생각해 볼 때 일본이 울릉도를 반환하게 된 계기가 안용복의 도일활동 때문이었는데, 이번 자료의 발굴로 안용복이 독도까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이처럼 안용복이 두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울릉도를 돌려주게 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독도는 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일본 측의 국제법적 주장과 허구성

1) 일본 측의 국제법적 주장

일본 측의 국제법적인 주장은 크게 1905년의 시마네켄 고시에 의한 합법적인 편입, 17세기 일본의 어부들에 의한 어로활동,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 조약에 의한 연합국 측의 영유권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가. 시마네켄 고시에 의한 권원 강화 주장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선점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³⁵⁾ 그러다가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시마네켄에 의한 편입조치가 선점행위와 같은 행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당시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독도는 일본에 의해 일찍부터 발견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33) 위의 논문, p. 56.

34) 山陰中央新報, 2005.5.17, 1면, 23면.

35) 大平善梧, “李ライント竹島の問題點”, 『日本及び日本人』, 1958. 3월호, p. 25; 植田捷雄, “竹島の歸屬めぐ日韓紛爭”, 一橋論叢, 제54권 제1호(1965), p. 31.

시마네켄에 의해 편입조치를 한 것은 독도가 여타의 일본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소도(無人小島)로 접촉도가 낮아서 원시적 권원이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시마네켄에 의한 편입조치로 다소 불완전했던 원시적 권원을 근대 국제법상의 확정적 권원으로 강화한 것이다³⁶⁾라고 주장을 바꾼바 있다.

그밖에 독도는 선점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서 독도 영유 의사를 재차 명확히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³⁷⁾라고 하기도 하고,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한국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한국측은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마네켄 편입조치의 합법성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³⁸⁾

고시의 통고의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마네켄 고시내용을 한국측에 통보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선점에 의한 영토 편입조치를 타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소수설에 불과하다. 1885년 베를린의정서가 선점의 요건으로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의정서는 지역적으로 열강의 식민지 다툼이 치열하였던 아프리카 연안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상제르망조약도 통고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국제선례도 통고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 통고가 국가의 영유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조약상의 특별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한 관습국제법상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래로 일본이 인식하여 왔고, 이를 유효하게 경영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 의하여 한번도 다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통고의무는 더더욱 없었다고 본다. 또한 시마네켄 고시가 일본의 일반 국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시마네켄의 고시 자체가 공시 또는 공표에 해당한다. 그 내용도 1905

36) 太壽堂鼎, 앞의 논문, p. 124; 皆川洗, “竹島紛争と國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 國際法學の諸問題』(東京: 慶應通信, 1963), p. 364.

37) 대한민국 외무부, 앞의 책, p. 234.

38) 皆川洗, 앞의 논문, pp. 367-368.

년 2월 22일자 시마네켄 현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동년 2월 24일자 ‘산잉신보(山陰新報)’에도 보도된 바 있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일본행정기관의 공개된 행위는 외면한 채 단지 외국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시마네켄 편입조치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의 부당한 왜곡이다.³⁹⁾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본래 일본 땅이었는데 원시적 권원이 불확실하여 시마네켄 고시를 하였다면 고시 이전에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관찬지도에 일본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일본의 지방 행정편제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증거는 많이 있다.⁴⁰⁾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같은 일본인 교수에 의해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일본의 어부들은 물론이고 정부 관료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편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다.⁴¹⁾

통고의무와 관련하여, 통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팔마스섬 사건에서와 같이 선점 사실을 관련국이 쉽게 알 수 있는 유인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무인도에 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인도의 경우 어느 국가가 선점 사실을 국내적으로만 고시할 경우 원래의 소유국은 해당 무인도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본의 아니게 선점을 목

39) 대한민국 외무부, 앞의 책, p. 234; 皆川洗, 앞의 논문, pp. 367-368; 太壽堂鼎, 앞의 논문, pp. 124-125; 植田捷雄, 앞의 논문, p. 30.

40) 일본수로부, 「조선수로지」(1894), p. 295; 일본해군수로부, 「환영수로지」 제2권(1883), p. 257

41) 堀和生, 앞의 논문, pp. 115-117.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이 비밀리에 편입을 한 것은 대한제국의 반발과 러시아의 경계를 우려한 때문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에 관한 행정구역을 재확인하였는데, 일본이 이 섬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연히 일본에게 항의하고, 열강들에게 호소하여 시끄럽게 할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이 동해상에서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알게 될 경우 전쟁수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던 야마자엔지로(山座圓二郎)가 “시국은 오히려 그 영토 편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한다면 적함을 감시하기에 극히 편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보면 명확하다.⁴²⁾

나. 실효적 지배의 우위 주장

일본은 실효적 지배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18년에 오다니 징기찌(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찌베에(村川市兵衛)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고 울릉도를 왕복하던 도중 독도에 들러 어로활동을 하였으며, 독도에서의 독점적인 어로권을 원했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의 청원에 의해 1905년 편입조치를 한 후에는 동년 5월 17일 관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마쓰나가 부기찌(松永武吉) 시마네켄 지사 일행이 해군 선박을 이용하여 독도를 시찰하였고, 1906년 3월에는 시마네켄 제3부장 칸니시 유타로(神西由太郎)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단이 파견되어 독도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또한 1905년 6월 5일 나카이 요사부로 등 4인에게 공동으로 독도 관유지 임차를 허가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였다. 그후 1908년에 어업취체규칙(漁業取締規則)을 제정하였으며, 1911년 12월 이 규

42) 김병렬, 『독도논쟁』, 앞의 책, p. 197.

척을 시마네켄 어업취체규칙으로 대체하면서 독도 인근 해역을 어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된 강치어업 외 일체의 어로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강치어업이 순탄치 못하여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아하타 초시로(八幡長四郎)에게 어업권이 이양되었다. 그후 1940년 8월 독도 소유를 마이쓰루(舞鶴) 해군기지로 인계하였는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독도에서의 어업을 금지시켰다. 전쟁이 끝난 1945년 11월 일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독도 관리권을 다시 대장성으로 이관시킨 바 있는 등 어떠한 국가의 항의도 받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도를 관리해왔다고 한다.⁴³⁾

야마베 겐타로씨(山邊健太郎)는 1618년 오다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사실을 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타국 영토 경영이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⁴⁴⁾ 또한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는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도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일의정서를 채택하고 외교교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여 항의를 할 수 없도록 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의 식민지화 정책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⁴⁵⁾

생각해 볼 때 1618년부터 일본인들이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고 울릉도를 왕복하던 중에 독도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의하여 두 섬을 조선의 것으로 확인하고 일본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한 조치로 인하여 불법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하여⁴⁶⁾ 섬에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음을 기화로 일시 섬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영유권의 근거로

43) 大熊良一, 「竹島史考: 竹島(獨島)鬱陵島文獻史的考察」(東京: 原書房, 1968), pp. 252-254; 植田捷熊, 앞의 논문, pp. 32-33.

44) 山邊健太郎, 앞의 논문, p. 8.

45) 內藤正中, 앞의 논문, pp. 60-62.

46) 자세한 내용은 김병렬, 「독도논쟁」, 앞의 책, p. 173.

삼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05년 이후의 어로 면허나 국유재산 관리 역시 1905년의 편입을 무효라고 할 때 원인무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영유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연합국 측에 의한 인정 주장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합국측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제6항을 보면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지적된 제소도(諸小島)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동 제1033호 제5항 역시 “위의 허가는 당해구역 또는 기타 어떠한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의 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명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결정한 최종적인 문서라고 볼 수가 없다.⁴⁷⁾

영토의 처분에 관한 최종적인 내용은 강화조약에서 규정하는데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을 보면 오히려 독도가 일본령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동 조약 제2조 a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은 1910년 한일합방 당시의 한국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일본에 포함되어 있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사상 한국의 영토였던 사실이 없으며, 1905년 시마네켄 편입조치 이래 일본정부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독도는 분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⁴⁸⁾

최근에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1947년부터 대일강화조약 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1947년 3월 20일자로 작성된 제1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47) 외무부, 앞의 책, p. 13.

48) 외무부, 위의 책, p. 13.

영토로 규정하였다.⁴⁹⁾ 이러한 내용은 제2차 초안을 거쳐 제5차 초안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⁵⁰⁾ 이처럼 독도가 한국 땅으로 된 내용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은 당시 주일 고문이었다던 시발드(William J. Sebald)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해 달라고 하면서 미국 국무부로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게 된다.

독도에 대한 제고를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권원주장은 오래되었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인 관점에서 기상과 레이더기지를 그곳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⁵¹⁾

이러한 시발드의 의견에 의해 미국은 제6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하였다가 이후 조약문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 독도의 표기가 빠지게 된다.⁵²⁾

이러한 과정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의 표기가 조약문에서 빠진 것은 연합국측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⁵³⁾ 그러나 일본 제12회 국회 중의원 회의록에⁵⁴⁾ 의하면 대일강화조약에서 비록 독도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속지도(후미 첨부)에 의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야마모토(山本) 의원이 쿠사바(草葉) 정무차관에게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쿠사바 정무차관은 답변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의 국회 의원들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49)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418-422.

50) 김병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서울: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 pp. 174-177.

51)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436-448.

52) 김병렬, 앞의 논문, pp. 177-193.

53) 외무부, 위의 책, p. 13; 植田捷熊, 앞의 논문, p. 24.

54)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1951.10.22)’, p. 4. 야마모토(산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쿠사바(草葉) 정무차관의 답변.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강화조약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땅이라고 하는 주장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한 부정

가. 한국 측의 국제법적 주장에 대한 부정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요건은 ‘국가의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영유의사는 군대를 보내 침입한 외적을 몰아내는 방법으로도 시현(示顯)이 가능하며 백성을 보내 개척하거나 주기적으로 관현을 보내 순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지도를 편찬하거나 지리지에 수록하는 것도 국가영유의사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1145) 이래로 「세종실록지리지」(1432), 「팔도지리지」(1477), 「동국문헌비고」(1486),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등 수많은 지리거나 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들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나 사서에는 모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이들 관찬서지를 편찬한 주체 즉 국가가 영유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430년(세종 12)년부터 1445년경까지는 동해상에 있는 요도(蓼島)⁵⁵⁾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었으며,⁵⁶⁾ 1469년(성종 원년)경부터는 다시 삼봉도를 수색하게 되고,⁵⁷⁾ 어려움 끝에 이를 발견한 후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다.⁵⁸⁾ 근대에 들어서서는 1900년 10월 22일 고종황제가 발

55) 세종실록, 세종 27년 8월 戊午條에 감사 崔雲渚가 “무릉에 갔다가 또한 이 섬을 바라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도를 독도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56) 세종실록, 세종 12년 1월 丁卯條, 세종 20년 7월 戊申條, 세종 27년 6월 甲寅條, 세종 27년 8월 戊午條.

57) 성종실록, 성종 원년 12월 甲寅條, 성종 3년 2월 庚午條, 성종 3년 3월 丙辰條, 壬寅條, 성종 7년 2월 壬午條, 성종 7년 6월 癸巳條, 성종 7년 6월 癸未條, 성종 10년 윤10월 戊寅條, 성종 12년 1월 癸未條 등.

령한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의 행정체계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국가 영유사의 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공도정책은 사실상 영유권을 포기한 정책이며,⁵⁹⁾ 설사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도 독도까지 수토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 독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방기(放棄)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⁰⁾

공도정책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마치 무인도는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즉 무인도라고 하여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유인도를 정책적으로 무인도화 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수토는 섬에 사는 백성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까지 실시하지는 않았다.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면 당연히 독도까지 수토를 하였겠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울릉도까지만 수토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내린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동부 그린랜드사건 판결에서 대상지역이 불모지 혹은 극한지일 경우 최소한의 권리행사 만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¹⁾ 따라서 독도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관찬지리지에 수록한다든지 울릉도 수토시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실효적 지배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00년에 칙령 제41호에 의거 울도군으로 행정편제를 하고 이후 울도군수가 관할토록 한 것은 실효적 지배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8) 성종실록, 성종 7년 10월 壬辰·丁酉條

59) 皆川洗, 앞의 논문, pp. 364-366; 植田捷雄, 앞의 논문, p. 20.

60) 皆川洗, 앞의 논문, p. 364.

61) Hudson, *Cases on International Law*, pp. 444-447.

나. 일본의 불법 탈취 사실 부정

일본은 1905년의 시마네켄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 편입이 당시 일본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1905년의 시마네켄고시에 의해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그전에 임자 없는 땅이거나 포기된 지역이어야 하고, 선점을 한다는 대외적인 공표가 있어야 하며, 그 후 실효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마네켄의 고시는 위의 어느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 탈취인 것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국병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키게 된다. 이틀 후인 2월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한국에서 전쟁에 필요한 땅을 징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제1차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필요한 군용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게 된 일본은 4월 3일 1개 사단을 차출하여 주차군(駐紮軍)을 편성한 후(곧 2개 사단으로 확충)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6월 15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쓰시마해협에 나타나 일본 해군의 수송선인 히다찌호(常陸丸)와 이즈미호(和泉丸)를 격침시키자 일본은 동해상으로 러시아의 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여 경고해 줄 수 있는 망루의 설치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1904년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울릉도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한 후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게 된다.⁶²⁾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실히 알게 된 일본은 울릉도에 망루를 추가 설치하고 독도에도 망루를 건설하고자 획책하게 된다. 만약 이때 울릉도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은 울릉도 전체를 편입하

62) 일본 해군군령부,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제4부 제4권, 부록 「비고문서」 제67호, pp. 20-21.

고자 했을 것이다.⁶³⁾ 하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망루를 설치하는 곳의 토지만 부분적으로 징발하였다. 그런데 울릉도와 달리 독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루가 설치되는 지역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징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04년 9월 24일 군함 니이다카호(新高丸)를 시켜 울릉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통째로 편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문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⁶⁴⁾ 때맞춰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나카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郎)라고 하는 어부가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⁵⁾

나카이 요사브로의 대하원에 대해 내무성의 반대도 있었지만 해군성과 외무성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편입을 결정하게 된다. 해풍과 기상의 악화로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는 것이 지연되던 도중인 5월 27일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맞아 동해에서 전투를 치른 일본은 더욱 망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7월에 울릉도 북망루를 건설하여 가동에 들어가게 하고, 7월 25일부터는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8월 19일에 준공하게 된다.⁶⁶⁾ 이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다가 10월 15일 전쟁이 종결되어 24일 독도망루를 철거하게 된다.⁶⁷⁾

위에서 보듯이 1905년 시마네켄의 독도 편입은 순전히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로 침탈한 것이지 일본이 주장하듯이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나 일본의 영토를 근대적인 조치에 의해 영유권을 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3) 자유신문, 1882. 8. 2자. 임오군란에 대한 배상책으로 울릉도를 빼앗자고 주장한다.

64) 군함 니이다카호 전시일지(1904. 11. 13),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 374 참조.

65) 원문은 김병렬, 위의 책, pp. 370-373.

66) 일본 해군군령부, 앞의 책, p. 276.

67) 위의 책, p. 276.

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에 의한 반환선언의 예외 주장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및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토 등 제반 문제 처리를 위하여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며,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절한 경로를 거쳐서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고⁶⁸⁾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는 1905년에 일본에 의해 약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후 포츠담 선언과⁶⁹⁾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문서에의⁷⁰⁾ 서명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그런데 독도는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 의해 반환되어야 할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⁷¹⁾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카이로 선언문을 보면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으로 다음 세가지를 기술하고 있다.⁷²⁾ 첫째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상의 모든 도서들이며, 둘째는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강탈한 만주, 대만, 펑호도 등이며 마지막으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들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독도를 탈취한 것이 아니고 1905년에 합법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의 시마네켄 고시에 의한 편입이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독도로부터 축출

68)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 411 참조.

69) 원문은 위의 책, p. 412 참조.

70) 원문은 위의 책, pp. 412-413 참조.

71) 皆川洗, 앞의 논문, pp. 367-368.

72)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410-411.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일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의 수뇌가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며, 소련도 8월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후 동 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⁷³⁾ 이 선언문에서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로 명확하게 한정된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령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국의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는 연합국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에 의해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부정

전후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던 연합국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구역들을 통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⁷⁴⁾ 제3항에서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라고⁷⁵⁾ 명시하여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1946년 6월 22일 발령된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를 통해 일본어부들의 독도 근해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위 제677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독도를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서 의미하는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지역으로 인정하고 이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측은 위 지령 제6조에 “이 지령 중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73) 원문은 위의 책, p. 412.

74) 일반적으로 SCAPIN 677호라고 부른다.

75)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415-417 참조.

선언 제8조에 언급된 모든 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것이 일본 영토를 확정짓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⁷⁶⁾

그렇다면 이 지령 제6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6조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령 제5조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령 제5조를 보면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5조의 의미는 다른 특정한 지령이 있으면 이 지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본의 영역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영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5조를 제6조와 함께 해석하면 “이 지령이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지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즉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하여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들 중 하나를 다시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명시적인 별도의 지령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이후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지령을 내린 바가 없으므로 이 지령에 의하여 독도는 한국에 영원히 반환된 것이다.

3) 소결론

17세기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1870년에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잠시 조선으로부터 거류를 위하여 차견한 바

76) 1945년 4월 25일자 일본측 각서, 원문은 김병렬, 위의 책, p. 414.

있다⁷⁷⁾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효적 지배라기보다는 조선이 공도정책을 시행하여 섬을 비워둔 사이 이를 몰래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는 오다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집안이 울릉도에 도항을 하던 시기인 1670년에, 막부의 허가를 받아 편찬한 관제지도인 정보일본지도(正保日本地圖)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이를 실효적 지배라고 우기는 것은 결국 주인이 이용하지 않는 땅을 이용하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하는 도독질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05년의 편입 자체가 불법인데 이후에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는니, 나카이 요사부로에게 독점적인 어업활동 허가를 내주었느니 하는 것들은 모두 원인무효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때 1945년 이후에 연합국 측에 의해 이루어진 제반 행정행위들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⁷⁸⁾도 있고 불리한 것⁷⁹⁾도 있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에 유리한 자료들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일본 측은 일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독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일본 측의 로비에 의해 휘둘러 이랬다저랬다 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이러니까 한국의 것이다 또는 이러니까 일본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매년 3월경이면 어김없이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서 대일강화조약 협상시 연합국 측에 의해 작성된 문서나 지도 등

77)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314-315.

78) 예를 들어 독도를 한국 땅으로 명기하고 있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1차-제5차 초안 등.

79) 예를 들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고 있는 제6차 초안.

80) 상세한 원문은 김병렬, 「독도자료총람」, 앞의 책, pp. 413-524; 이에 대한 해설은 김병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서울: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 pp. 165-196.

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연합국 측에서 작성된 문서가 되었든 지도가 되었든 그것은 하나의 초안일 뿐이다. 초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마치 그것 하나로 독도영유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전체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자세가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오히려 1952년 9월에 있었던 미공군기들에 의한 독도폭격 사건이 있자 우리 정부는 미국 대사관으로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장과 함께 미극동군 사령관이 독도를 폭격연습지에서 제외시킨 사실 등이 영유권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3. 어업협정과 독도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이 협약을 비준한 한국과 일본은 모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동안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일간에 어업질서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데 한반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의 어선 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되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껴오던 일본은 기존의 어업협정을 개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1965년 어업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일본은 1996년 6월에 확장된 직선기선을

81) 자세한 내용은 홍성근,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한국의 독도영유권연구』 (서울 : 독도연구보전협회, 2003), pp. 377-406.

발표한 후 1년 후인 1997년 6월부터 동 기선 내에서 조업하던 한국의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차례 어업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진전이 없자 일본은 1998년 1월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게 되고 이에 맞서서 한국은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정지시킴으로써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후 한국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신어업협정 협상이 급진전하게 되어 1998년 11월 28일 서명하게 되고 이듬해 1월 23일 발효하게 되었다.

이 협정과 관련하여 동해 중간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과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간수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말일 뿐 협정상의 공식용어는 아니다.⁸²⁾ 이러한 중간수역의 성격과 규제는 부속서 I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동해 중간수역내에서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旗國主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조치를 공동위원회에서 각 체약국에 권고하되 각 체약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서의 규제가 남해 중간수역내의 규제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남해 중간수역내의 규제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권고'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체약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권고'는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성격이 어떠한지 이러한 동해 중간수역이 설정된 이유는 한·일 양국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

82) 협정에서는 제9조의 1항에서 단지 지리적 좌표만이 표시되어 있다.

나 아이러니하게도 협정문 어디에도 독도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상의 문제 즉 독도영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은 한국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협정은 어느 쪽에도 유리 또는 불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영구 교수는 종래의 EEZ경계선 획정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에서 후퇴하여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서 타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는 한·일간에 독도영유권 문제가 분쟁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⁸³⁾ 제15조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보이나 일본 측에서 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되어 결국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⁸⁴⁾고 하면서 나아가 이 조항은 한국에게는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일본에게는 이(利)를 주는 현상변경적 의미를 갖는다⁸⁵⁾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기 교수 또한 제15조의 의미는 “협정수역 내에서의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배타적 수역의 내용인 해상과 해저 지하에서의 생물·비생물 자원의 관할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장차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그리고 수역경계획정의 경우 한

83) 김영구,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 『독도영유권연구논집』(서울: 독도연구보전협회, 2002), p. 235 참조.

84) 김영구, 위의 논문, p. 236.

85) 김영구, 위의 논문, p. 238.

국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⁸⁶⁾ 이상면 교수와 신용하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해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고 동 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므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권에서 분리되어 공동관리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도서분쟁이 있음을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등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⁸⁷⁾

반면에 신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정갑용 박사는 첫째, 어업협정은 어업수역을 합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어족자원의 관리 및 획득에 관한 법질서를 정하는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어업협정상 어업협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중간수역 등의 어업수역이고 독도 및 주변해역이 중간수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다. 셋째, 어업협정의 전문은 한·일간의 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어업질서 및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협정의 제15조에서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하여 양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다.⁸⁸⁾ 한국해양연구원의 권문상 박사 역시 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과도기적인 잠정약정이 최종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965년의 구어업협정도 울릉도는 공동규제수역에 독도는 공동자원조사수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울릉도나 독도의 영유권에 손상이 가지 않았고, 남태평양의 여러 국가들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86) 김명기, “한·일 어업협정 폐기의 법리”, 한겨레신문, 2005. 5. 12.

87) 신용하, 「현대해양」(서울: 현대해양연구원)(1998. 12), pp. 49-51; 이상면, 위의 책, p. 53.

88) 정갑용, “새로운 한·일어업협정과 법적 문제”, 「국제법학회논총」(서울: 대한국제법학회), 제43권 제2호(1998. 12), p. 232.

이로 인하여 도서의 영유권문제가 야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⁸⁹⁾ 또한 외교부의 정해웅 박사도 “독도와 그 영해가 ‘한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둘러싸이지 않고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중간수역’의 구분은 어업협정의 목적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⁹⁰⁾ “협정이 독도 자체와 그 영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독도 영해 외측의 수역에는 적용이 되므로 독도 영해 외측 수역의 법적 지위가 협정에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독도의 지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독도 영해 주변수역은 ‘중간수역’으로서 이 수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법령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일본의 법령은 한국의 국민과 어선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며, 어업에 관한 한국의 법령은 일본의 국민과 어선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나 그 영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어업협정을 원용할 근거는 없다. 만일 이 협정이 없었다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중간선에 둘러싸이는 수역에서 한국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일본의 국민과 어선에게 적용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한국의 국민과 어선에게 적용하여 마찰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양국의 어민이 독도 영해 주변에서 조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국제관례에 비추어 자명하다”라고 하고 있다.⁹¹⁾

생각건대, 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배분하고 어족자원의 관리 및 획득에 관한 법질서를 정하는 것이란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89) 권문상,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의 주요쟁점과 정책방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세미나자료, 2005. 4. 28), p. 33.

90) 정해웅, “EEZ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1999), p. 27.

91) 위의 논문, p. 27.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독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만일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중간수역이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선과 독도와 오키도 중간선 사이로 설정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독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이번의 어업협정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영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현실적으로 한·일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측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독도

일본에서 세칭 한류 붐이 한창인 가운데 ‘한·일 우정의 해’라고 하여 모처럼 한·일간에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켄에 의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로 격분한 노무현대통령이 “다케시마의 날 선포는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일본에 외교전쟁을 선포했다.⁹²⁾

그러자 일본은 이에 맞서기라도 하는 듯 4월 5일 발표된 교과서 검정본에서 종전의 후쇼사(扶桑社),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 이외에 동경서적(東京書籍), 대판서적(大阪書籍)이 추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책임성 있는 각료인 문부상은 기회만 되면 독도는 일본

92) 노무현,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청와대 브리핑(2005. 3. 23).

땅이라고 떠들어대고 있고,⁹³⁾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한·일간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구성하여 상호 아무런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상대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가 하면, 화폐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고, 군대까지 연합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하는 말까지도 독일어, 불어를 떠나 영어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은 무성하지만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중·일 3국은 고사하고 한·일간에 체결하기로 했던 자유무역협정 조차 기약이 없다.

물론 시마네켄의 조례제정에 대해 한국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할지 모르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측면도 있고,⁹⁴⁾ 개중에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교수나 니시치 야스히로(西地保宏)⁹⁵⁾ 선생과 같이 양심적인 인사들도 있지만 “독도문제는 한국정부가 여야 대립에 따라 국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 있다.”⁹⁶⁾ “한국내 반일시위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본인들 사이에 존재한다.”⁹⁷⁾ “한국 측은 일본의 우경화를 독도문제 악화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의 우경화는 태평양전쟁 이후 지나치게 좌경화되었던 것이 이제 비로소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데 불과하다.

93) 5. 13 일본 동경의 한 초등학교를 시찰한 자리에서 6학년 학생의 질문에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둬야 한다”고 답변, 연합뉴스, 2005.5.14.

94) 이토겐이치(伊藤健一), 2005. 4. 27~28일간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포럼에서 발언.

95)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결의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시마네현 의회는 을사조약이나 한국병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연기 성남고에서 강의했다. 중도일보, 2005. 5. 17.

96)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중의원의원, 2005. 4. 27~28일간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포럼에서 발언.

97)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수, 위 포럼에서 발언.

오히려 노무현정부의 좌경화와 친북, 반일, 친중 경향이 더 문제다.”⁹⁸⁾ 등과 같이 문제의 책임을 오히려 한국 측으로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볼 때 한·일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먼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너무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독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실적인 양국민의 인식차이를 고려할 때 오히려 독도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상호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면서, 각종의 다종다양한 채널로 한·일간 대화를 활성화시켜 상호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한·일 FTA를 조기에 체결하여 상호간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흰 종이에 검은 점이 있을 수 있고, 검은 종이에 흰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흰 점이 있다고 해서 검은 종이를 흰 종이라고 할 수 없듯이, 검은 점이 있다고 해서 흰 종이를 검은 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죽도도설(竹島圖說)」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명확히 기술한 일본의 고문서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의 고문서에 독도가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명확치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야마베 겐타로씨가 “어떤 나라의 변경지대에 관해서 침략국 쪽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예는 대단히 많다”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그는 또한 “적어도 명치 37(1904)년 경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인

98) 사이토 츠토무(齋藤勉) 산케이신문 정론실장, 앞 포럼에서 발언.

의 인식이 ‘조선령’ 혹은 ‘소속불명’이었던 데 반해 한국인이 독도를 경영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독도편입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에 의해 평화적으로 관리되어 온 섬을 왜구들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게 되자 오다니와 무라카와에게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을 가지고 역사적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트 세이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도둑질에 불과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영토팽창 욕심에 의하여 일으킨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편입을 할 때 을사늑약, 고문정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항의가 없었으니 편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짓을 할 때 항의가 없었으니 강도짓이 유효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하여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이며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와카미야 게이분(若宮啓文) 기자가 말한 것처럼⁹⁹⁾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흔쾌히 양보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다른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호의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독도를 ‘우정도(友情島)’라고 별명을 붙여 일본사람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도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원고투고일 : 2005. 7. 29,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독도, 울릉도, 국제법,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한·일어업협정

99) 若宮啓門, “竹島と獨島これを「友情島」に…の夢想”, 産経新聞, 風考計, 2005.3.27.

<ABSTRACT>

A Study on *Dokdo* Issu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

Kim, Byung-ryull

Dokdo is an administrative part of *Ulleungdo*, which is a peculiar territory to Korea under its peaceful control since A.D. 512. On the other hand, Japan alleges her dominion on *Dokdo* based on the '*Eunjushichunghabki*' historically. And she says that she strengthened the definite title of international law, by the action being the island to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Shimane* Prefecture. She asserts that she has superiority over *Dokdo* by *Odani* and *Murakawa's* fishing around the island in 17th century. Furthermore after 1945 the 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 recognized the Japan's claim to *Dokdo*.

However, many Korean scholars objected to Japan's claim for *Dokdo*. And furthermore, some Japanese conscientious scholars, such as *Yamabe Kentaro*, *Kajimura Hideki*, *Hori Kazuo*, *Naito Seichu*. refuted that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Dokdo* was wrong. According to these scholars, Japan investigated the area which was applicable to the imperial constitution when she enacted the constitution, after then '*Jegukpando*' the name of the report was drew up. They said that It was wrong that *Dokdo* was Japan's peculiar territory, because it was not found in '*Jegukpando*'. And *Dokdo* was restituted definitely when *Ulleungdo* was restituted.

The fact of giving back *Ulleungdo* means the return of *Dokdo* can be judged by the recognition of *Dokdo* as an adjacent part of *Ulleungdo*, and It makes sure *Dokdo* was restituted by the action of *Ahn Yong-bok*. In addition

the ‘*Unjushichunghapki*’ gives stronger proof that the territorial boundary of Japan is restricted within *Oki* Island. Especially Professor *Naito Seichu* said that it was a shame to claim Japan’s title by using the passport to *Ulleungdo* in 17th century, because it was a kind of thief using the *Joseon’s* Island Vacancy Policy’ which was made because of Japan’s pirates. They said the occupation of 1905 was a process to effectuate the Russo-Japanese war and clearly illegal, knowing that it was a territory administrated by the *Joseon* Government, and Japan made a situation impossible to protest.

When we say about to the Fishery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some scholars say the status of *Dokdo* has been damaged, but other scholars say that agreement has no effect on the status of *Dokdo*.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there was not any problem on the status of *Dokdo*. But it can not be denied that sudden set-ups of the surroundings of *Dokdo* as a Mediate Fishery Zone plays a role as a show of the conflict on the possession of *Dokdo*.

Korea and Japan are standing face to face due to the falsified history in the public textbooks of Japan and the possession of *Dokdo*. The reason of the opposition Korea has in mind is that Japan does not reflect on their mistakes and invasion of the past, however on the other hand Japan thinks that the Leftism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ti-Japanese, Pro-Chinese, Pro-North Korea is the reason of this conflict. So this difference of understanding makes a hug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t will be most desirable for Japan to give in *Dokdo*, but in reality it will be impossible because it is so many sensitive issue. So I think it is better not to irritate each other and focu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mutual benefit and prosperity.

Key Words : *Dokdo*, *Ulleungdo*, International Law, Japanese Government’s Claim over *Dokdo*, Korea-Japan Fishery Agreement